

www.hyosungfms.com

쉽고 빠른 자금관리의 시작 효성 CMS

서비스 이용 신청서

가입문의

1544-1059

HYOSUNG FMS

효성 CMS와 함께라면 정확한 자금계획과 집행이 가능합니다.

비즈니스의 성공과 성장을 좌우하는 건
안정적인 자금관리입니다.

효성CMS는 직접 현장에 나가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과 자금구조, 조직문화까지
사업자가 처한 상황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해 최적의 맞춤
자금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수납자동화, 모든 결제 수단과
결제방법을 아우르는 통합결제서비스,
국내 모든 은행과의 강력한 제휴 등 효성
CMS의 차별화된 서비스는 모든 사업자가
자금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고
진단해 안정적인 경영 전략을 세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
입니다.

가입 및 이용절차

- 가입문의
- 가입안내
- 이용신청서 제출
(구비서류첨부 및 가입비납부)
- 심사/가입승인
- 서비스교육
- 서비스이용

가입 연락처 및 접수방법

대표전화

1544-1059

email. cms@efh.co.kr

신청서와 구비 서류는 스캔 후
이메일 회신해 주세요.

CMS페이먼트
cmspayments.co.kr

효성 CMS 소개 CMS이용기관과 납부고객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계좌, 신용카드, 휴대전화, 가상계좌 등 모든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서비스입니다.



계좌 자동이체

납부고객 계좌에서 CMS이용기관 계좌로 수납대금이 안전하게 자동이체 됩니다.
CMS이용기관은 수납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납부고객은 신용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자동결제

수납대금이 납부고객의 신용카드로 자동결제 되면 CMS이용기관 계좌로 정산됩니다.
납부고객의 주요 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CMS이용기관은 수납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자동결제

수납대금이 납부고객의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 청구되는 후불 결제 방식입니다.
납부고객의 간단한 정보(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성별)와 동의 절차만으로 매월
자동결제가 가능해 소액결제 시 납부고객과 CMS이용기관 모두에게 간편합니다.



가상계좌 입금

납부고객에게 전용 입금계좌를 만들어 제공할 수 있습니다. CMS이용기관은
이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명세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성 CMS 가입 구비서류

작성 서류

서비스 이용신청서(3종)

- 서비스이용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취급위탁 동의서
- 효성CMS이용요금 자동이체 신청서

추가 서류

- 고객 거래확인서(개인용, 법인용 구분)
별도 첨부로 배포됩니다.

구비 서류

개인사업자/비영리단체

- 사업자사본
- 대표자 신분증사본(생년월일만표기)
- 통장사본
- 사업 여부 증빙(문의)

법인사업자/법인비영리단체

- 법인등기부등본(발급용, 3개월이내)
-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 사업자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생년월일만 표기)
- 통장사본
- 사업 여부 증빙(문의)

- 사업여부 증빙은 업종별 구비 서류입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 비대면 가입 신청 업종은 담당자가 사전에 안내합니다.
- 일부 업종 및 사업장은 담당자 방문 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신청서

☒ 신청업체정보 [☐법인 ☐개인]

이 용 신 청 I D		상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명	
법 인 등 록 번 호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주 소	
세금계산서 수신이메일 ¹⁾			
홈 페이지 URL ²⁾			

▶ 1) 세금계산서 수신이메일에 작성한 주소로 서비스이용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발송됩니다. Daum메일(한메일)은 세금계산서가 스팸차단 되는 경우가 빈번하오니 가급적 다른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전자동의 서비스 및 신용카드 일반결제(PG) 등 온라인 수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서비스

서 비 스 구 분	☐ ASP (출금방식: ☐ 변동 ☐ 고정) ☐ 연동	프로그램명:
-----------	--	--------

☒ 상세신청서

(VAT별도)

서 비 스 이 용 목 적	이용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 비 스 이 용 요 금	가입비	원	월사용료	원
이용요금납부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실명번호 ¹⁾	
수 납 계 좌 정 보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실명번호 ¹⁾	

▶ 1) 계좌실명번호란 금융기관에서 계좌 개설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실명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생년월일 등)입니다.

서비스 이용 조건 (해당항목에 체크하세요)	서비스구분		수수료		정산주기		기 타							
	CMS	☐ 일 반	의뢰	원/출금	원	출금일로부터	영업일	건당/월간 출금한도	원/ 원					
		☐ 실 시 간	의뢰	원/출금	원	출금일로부터	영업일	보 증 방 식	☐ 보증보험(%) ☐ 협력사 보증 ☐ 현금담보(%) ☐ 기타()					
	신용카드	☐ 자 동 결 제	일반	승인액의	%	승인일로부터	일	건당/월간 출금한도	원/ 원					
		☐ KEY-IN결제	영세	승인액의	%									
		☐ P G 결 제	중소 1	승인액의	%									
		☐ P G 결 제	중소 2	승인액의	%									
	☐ P G 결 제	중소 3	승인액의	%	보 증 방 식	☐ 보증보험(%) ☐ 협력사 보증 ☐ 기타()								
	☐ 휴대전화	승인액의		%	결제승인월로부터		개월 후		일 ex) 2개월 후 말일					
	☐ 가상계좌	입금건당		원		입금일로부터	영업일	신 청 계 좌 수						
								신 청 은 행						
								기본예금주명						
	부가서비스		☐ 계좌조회 ☐ 전자동의(ARS) ☐ 전자동의(모바일) ☐ 현금영수증											
	기 타													
	특약사항													

▶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 계좌조회 100원/1건, 전자동의 250원/1건 (VAT 별도)
▶ 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요금은 익월 5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 신청한 계좌에서 자동출금을 하며 미납 시 25일까지 재출금됩니다. 마지막 출금 후에 미납인 경우 서비스가 중지됩니다.
▶ 가상계좌서비스는 당사와 제휴된 금융기관에 한하여 제공되고 있습니다. (KEB하나, 우리, 대구, 경남, 우체국, 부산, 기업, 국민, 전북, 농협, 신한, SC, 광주, 씨티)
▶ 영세한 중소기업가맹점에 해당하는 업체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반기마다 갱신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업체)은 서비스 신청에 따른 이용조건 및 이용거래약관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을 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업체) : _____ ※ 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구비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취급위탁 동의서

자동이체동의서 의무 징구 확인서

자동이체통의서 의무 징구 안내	자동이체통의서 요건
가) 자동이체통의서는 통의서 요건에 맞게 징구하셔야 합니다. (유선 또는 구두통의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 출금하고자 하는 서비스(혹은 물품)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통의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자동이체 통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 자동이체통의를 받지 않은 경우 미수금이 있다고 임의로 출금 할 수 없습니다. 라) CMS서비스는 단순한 지급출금기가 아닌 금융관련 법률에 따른 금융서비스이며, 동의 없는 출금 시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청구 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가) 자동이체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예금주의 서명(또는 인감)날인이 명확하게 되어야 합니다. 나) 계좌번호(혹은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 상의 생년월일(혹은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와 출금일 (예정일)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 서비스(혹은 물품)를 제공하는 업체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라) 자동이체 되는 서비스(혹은 물품)의 명칭과 금액(변동금액인 경우 금액의 산정 기준)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예 : 기정료에 대하여 출금 통의를 받는 자동이체통의서로 조정은 출금 불가) 마) 고객의 자동이체와 관련된 정보를 호성에프엠에스(주)로 제공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바) 녹취 시에도 가)~마)항이 정확히 녹취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자동이체동의서 의무 징구 안내를 (받았으며) 서비스 이용을 위해 위의 자동이체동의서 요건대로 징구할 것을 (확약합니다.)

귀사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본인은 위의 명기된 [자동이체동서 의의 징구 안내]와 [자동이체동서 요건], 이용가래약관에 표기된 제 18조[자동이체동서 접수]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를 받았으며, 귀사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자동이체동서를 충실히 징구할 것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부주의로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청인(업체)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_____ (인감)

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

조회할 신용정보	식별정보 / 신용조회기록 /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지급, 금융질서문란정보) / 신용등급 / 신용거래정보 등		
조회목적	여신심사 / 계약체결 및 유지 판단여부 / 연체관리 / 민원처리 등	신용정보 조회 회사	NICE평가정보㈜, SOI평가정보㈜
조회동의 효력기간	귀하가 동의를 제출한 시점부터 당해 계약의 효력이 종료하는 시점까지 동意的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意的 효력은 소멸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 이용기간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불이익	계약의 성립에 필수적이므로 동의가 없을 경우 계약의 성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명(대표자) : _____ 생년월일 : _____ 성별 : ☐ 남 ☐ 여 휴대전화번호: _____

본인은 이용거래약관 제 15조[신용정보의 조회]에 의거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본인은 귀사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조회회사로부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_____ (서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취급위탁에 관한 동의

가.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 목적	이용서비스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권유, 계약 성립/변경 내용 및 이용요금 연계정보 고지,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 제공, 민원업무처리, 고객 만족도 조사, 경품지급, 사은행사 등 정보 제공
수집 · 이용할 항목	성명, 직위, 부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보유 · 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 이용됩니다. 법령상 의무이행의 목적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해당 정보는 일정기간 보유 · 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불이익	당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 · 이용하며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나. 취급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받는 자	영업대행협력사, S/W제휴협력사, 효성TX(통합운영센터)	
이용 목적	구 분	취급위탁 목적
	영업대행협력사	서비스 이용 교육 및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등
	S/W 제휴 협력사	제공하는 S/W 유지 및 성능 개선 등
	효성TX	통합운영센터 운영, 서비스 안내 및 변경, VOC접수/해결, 고객만족도 조사 등
위탁 항목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목적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에 한함 성명, 직위, 부서,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	위탁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위탁업체 현황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내용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보유·이용 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계약의 종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불이익	당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정보만을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위탁업체에 위탁하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에 대해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업무담당자 정보 (업무담당자의 정보를 기재하세요.)

성명	직위	부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귀사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취급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제22조,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하거나 취급위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07.01 시행 20 년 6 월 일 업무담당자 성명 : _____ (서명)

효성CMS이용요금 자동이체 신청서

금융기관 및 효성에프엠에스(주) 제출용

수납업체 및 목적			
수 납 업 체	효성에프엠에스(주)	수 납 목 적	효성 CMS 이용요금 출금
대 표 자	강 인 식	사업자등록번호	211 - 87 - 98181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1 (수서동, 수서빌딩 5층)		

자동이체 신청내용					
신청 정보	신 청 인	예금주와 관계 ()		연 락 처	
	이 용 요 금	원 부가 서비스 요금은 별도 계약조건에 따름		출 금 일 매월 5일 ※미납시 재출금	
금융 거래 정보	은 행 명			예 금 주	
	계 좌 번 호				
	예금주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개인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6자리 (ex : 840510) ※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 (ex : 1208711000)	
	예 금 주 휴대전화번호				
개 인 정 보 활 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 용 동 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 공 동 의	개인정보 제 3 자 제공 동의			

※자동이체 동의여부 통지 안내 : 효성에프엠에스(주) 및 금융기관은 안전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예금주 휴대전화 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 (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신청인(예금주)은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효성 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_____ (인감)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_____ (인감)

1.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른 경우 반드시 예금주의 별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2. 인감 또는 서명은 출금통장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3. 기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서를 신규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신청가능은행 : 국민, 우리, 신한, 농협, KEB하나, SC, 기업, 씨티, 산업, 새마을,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수협, 신한, 우체국, 유안타증권, 삼성증권
5. 자세한 내용은 이용거래약관을 참고 바랍니다.

서비스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본 약관은 자금관리서비스(이하 “CMS”라 한다)의 제공자인 효성에프앤에스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CMS 이용자(이하 “이용자”이라 한다)와의 서비스이용거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용어의 정의 】

- ①“CMS이용거래”란 회사가 제공하는 CMS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하는 거래를 통칭한다.
- ②“이용자”란 회사로부터 CMS 이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 ③“자동이체”란 이용자가 자기의 납부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납부 받아야 할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 각종 수납자금의 납부가 자동으로 이루어져서 이용자의 수납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말한다.
- ④ 본 약관에 명시된 일란 다음 각호를 제외한 날을 말한다.
- 1.대통령령에 의한 공공서의 공휴일
- 2.요일
- 3.근로자의 날
- ⑤“결제수수료”란 이용자의 수납 또는 지급 모체화를 통해 자금을 입금 또는 배분하는 대가로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⑥“사용료”란 회사가 이용자에게 CM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련의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⑦“이용요금”이란 가입비와 결제수수료, 사용료를 말한다.
- ⑧“납부자”란 이용자의 거래고객을 말한다.
- ⑨“결제”란 이의 승인을 위한 회원정보를 보유하고 결제 승인된 금액을 수납 대행하여 결제대금의 입금을 하는 원천기관을 말한다.
- ⑩“접근대체”란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문법”상의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항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⑪“출금(거래지시)”, “통입관리시스템”(이하 “통입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납부자의 자금지체신청(출금이체 동의서) 사본을 보관하고 납부자가 자동이체 동의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공동시스템을 말한다.
- ⑫“비정상 거래”란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용자가 CMS이용거래 시 납부자의 본인여부 확인 미흡으로 발생한 부당 거래와 분실, 도난, 해킹, 허위발급, 도용, 위조, 변조된 결제수단 및 인증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거래
2. 납부자가 CMS이용자로부터 제3차로 용역의 정상적인 제공을 받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되거나 본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납부자의 동의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
- ⑬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 【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 ①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단, 이용자의 약관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 모사전송 또는 우편의 방식으로 약관을 사본을 교부한다.
- ②회사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홈페이지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며,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비스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는 외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이용자가 사전에 제공한 전자메일로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법령에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약관을 변경할 때는 해당 서비스의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하며,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고하고 전자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이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전항의 기간 안에 이용자의 의의가 도달한 날을 인하여 이를 소멸한 것으로 본다.
- ④CMS이용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⑤전자금융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수단을 통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납부자가 이용자에게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서비스(ARS녹취대행, 모바일간편결제 등)
- ⑥신용카드결제서비스: 납부자가 이용자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신용카드 지불정보가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결제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일치하지 여부 및 승인, 매회,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신용카드 자동결제서비스를 포함
- ⑦전자금융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수단을 통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납부자가 이용자에게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서비스(ARS녹취대행, 모바일간편결제 등)

제 4 조 【 CMS이용거래의 범위 】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CMS이용거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자금지체서비스: 이용자가 납부자로부터 납입 받거나 상한 받아야 할 각종 수납 자금을 납부자의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자동 출금하여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이하 “수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는 서비스
- ②후대문결제서비스: 후대문번호를 비롯한 납부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여부를 인증하고 후대문요금을 후불로 통합하여 과금하는 결제서비스
- ③유선전화결제서비스: 유선전화번호를 비롯한 납부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여부를 인증하고 전화요금도 후불로 통합하여 과금하는 결제서비스
- ④가상계좌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용자 자신과 계좌에 부하여 가상계좌를 개설한 자금을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와 입금금원의 전출업무
- ⑤신용카드결제서비스: 납부자가 이용자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신용카드 지불정보가 회사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결제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일치하지 여부 및 승인, 매회,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신용카드 자동결제서비스를 포함
- ⑥전자금융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수단을 통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납부자가 이용자에게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서비스(ARS녹취대행, 모바일간편결제 등)

제 5 조 【 가입유지 및 비밀보장 관리 】

- ①이용자와 회사는 업무 수행 상 인지 또는 획득한 제반 사항을 본 업무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회사는 본 업무처리와 관련된 비밀보장을 성실히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번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 6 조 【 계좌의 지정 】

- ①이용자는 회사가 제4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이용할 수납계좌를 지정한다.
- ②이용자가 수납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는 회사가 이를 승인하고 전산등록을 마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조 【 이용요금 】

- ①이용자는 CMS이용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와 약정한 이용요금을 납부한다.
- ②이용요금은 결제기관의 수수료 변동 및 회사의 업무처리비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이용요금은 그 결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는 익월의 1일부터 적용된다. 회사는 이용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가 이용자의 E-mail 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 17항에 고지한다.
- ③회사는 납부자로부터 수납한 자금을 수납계좌에 입금할 때 통 자금에서 결제수수료를 공제한다. 단 결제수수료는 회사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제4항의 사용료와 합산출금 할 수 있다.
- ④회사는 첫 이용거래가 발생한 월부터 서비스 해지처리까지 원로된 월까지 매월 사용료를 부과한다.
- ⑤회사는 이용자에게 부당한 사용료를 익월 5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에 이용자가 신청한 사용료 납부거래에서 별도의 지령장구서 없이 CMS로 자동 출금한다. 단,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미납요금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할산하여 출금할 수 있다.
- ⑥이용자가 납입일에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납입일 이후부터 25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전영업일)까지 매영업일 또는 회사가 지정한 날에 제출한다.
- ⑦이용자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서비스 해지의 사유를 밝힌 경우, 회사는 납부자로부터 수납한 자금을 수납계좌로 입금할 때 이용요금 전제를 공제할 수 있다.
- ⑧회사는 제6항에 따른 채 출금 시에도 불구하고 이용요금이 미납된 경우 CMS이용거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12조 제3항에 따라 CMS 이용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 ⑨회사는 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용요금에 대하여 사용료는 납부 확인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수수료는 해당월 말일에 사전 등록된 이용자의 E-mail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한다. 단, 결제수수료를 사용료와 함께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와 동일하게 발송한다.
- ⑩회사는 이용자에게 발송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이용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이용자가 서비스 파면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제공사이트(www.smileedi.com)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⑪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의 3항에 의거하여 영세한 중소기업자등에게 해당하는 이용자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최대수수료율을 감안하여 설정하여 반비보다 갺신 할 수 있다.

제 8 조 【 거래내용의 확인 】

- ①이용자는 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내용을 CMS이용거래 시 해당하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확인할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14일 이내에 고부하여야 한다.
- ③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 및 기타 지위를 확인할하여야 한다.
- ④회사는 CMS이용거래의 내용을 주적, 검사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5년간 유지, 보존한다.
- 1.CMS이용거래의 종류 및 상대방에 관한 정보
- 2.CMS이용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3.CMS 이용거래가 이루어진 거래계좌번호, 거래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의 일부 내역
- 4.회사가 CMS이용거래의 대가로 받은 이용요금
- 5.납부자의 출금동기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파일

제 9 조 【 손실부담 및 면책 】

- ①서비스 일련의 본 약관에 의한 업무처리 시 과실 및 전산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에 입했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귀책 당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②회사는 접근체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 손해금에 대해 배상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자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과실유무 없이 발생한 전진, 화재, 건물외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이용자가 접근체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용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체제를 이용하여 CMS이용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체제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4.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에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 보안장치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5.결제기관의 정책변동이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CMS이용거래가 처리되지 않은 경우
- ④이용자로부터 접근체제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체제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 ⑤이용자는 CMS 이용거래와 관련하여 납부자와 관련한 분쟁발생(본인확인 미흡, 부당입금, 비정상거래 등)시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0 조 【 거래지시의 철회 】

- ①이용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CMS이용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다.
- ②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자동이체는 회사의 지정된 마감시간까지 CMS이용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다.
- ③회사는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CMS이용거래의 성질상 회사가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지시에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 ④납부자의 사망 · 한정지식선고 · 금치산선고나 이용자의 동의 회사의 해산 · 합병 · 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권리 ·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1 조 【 이용자의 의무 】

- ①이용자는 CMS이용거래의 대가로 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대체자 유출지시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CMS이용거래에 필요한 접근체제를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양도 또는 담보제공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접근체제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의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③이용자는 본 약관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CMS 이용거래를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④이용자는 CMS이용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납부자의 거래은행명, 지점명 및 예금계좌번호, 생년월일, 사업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유선전화번호, 거래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 납부자에 관한 제반 사항을 납부자의 동의 없이 CMS이용거래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이용자는 납부자에게 자동이체 신청 및 출금예정내역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는 납부자의 거래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⑥이용자는 납부자 또는 회사가 출금동기에 관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해 주어야 하며, 납부자가 자동이체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⑦이용자는 이용자정보(이메일, 대표자명, 사업자정보,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E-Mail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및 계좌정보가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회사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간과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 및 계좌정보 변경은 회사가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 ⑧이용자는 자동이체 청구가 종료된 해지납부자의 ‘해지데이터’를 반드시 회사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1년간 출금거래내역이 없는 회원을 해지납부자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⑨이용자는 제12조(납부자의 보호)에 명시된 납부자 보호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⑩이용자는 회사의 CMS 이용거래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거래 내역의 사실 확인 및 미수금(채권) 발생시 채권관리가 가능하도록 중방자료를 포함한 거래내역 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중방자료를 대해 회사의 제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제3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방자료 미제출 및 비정상거래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⑪이용자는 납부자가 소비자보호 관련법령 상의 “절취권”, “항변권” 등의 행위를 통하여 구매취소(청약의 철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신용카드거래 관련법령상 가맹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회사 명의의 가맹점 명의로 사용되는 것을 이유로 위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회사에게 전가하여서는 안된다.
- ⑫이용자는 가상계좌서비스를 포함하여 있어 납부자에게 가상계좌를 부여 시 가상계좌는 납부자의 소유가 아니며 이용자에게 납부하는 것임을 납부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여야 한다.
- ⑬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에게 납부자의 개인식별정보는 제공되나 금융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회사에 요구할 수 없다. 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자는 납부자 동의요청 시 사전에 납부자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며, 본인확인 소홀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 ⑮이용자는 서비스이용신청시 제출한 이용목적외로만 CMS이용거래를 하여야 한다. 단, 이용목적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에 이용변경신청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제 12 조 【 서비스의 중지 및 해지 】

- ①이용자는 회사에게 CMS이용거래의 중지 및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이용자가 CMS이용거래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가 제공한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지일은 회사가 이용자의 정보에 전신 통보한 날로 한다.
- ③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 제5항의 절차에 따라서 CMS이용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 단,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적절한 소령으로 해지의 원인을 해소할 때까지 회사는 CMS이용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납입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납한 경우
3.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이용자가 CMS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이용자의 폐업이 확인된 경우
6. 이용자의 착오입금으로 인한 인원이 연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7. 대차자의 이만, 구속, 실형, 사망 등으로 이용자의 CMS이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이용자가 CMS이용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9. 결제기관 및 감독기관에서의 이용자의 해지결고자 있는 경우
10. 납부자의 동의 없이 CMS이용거래를 통하여 납부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11. 이용자의 최근 6개월 동안 이용요금 납부실적이 없는 경우
12. 납부자의 민원 발생 시 이용자가 민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응하지 않는 경우
13. 제11조(이용자의 의무)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14. 납부자의 민원이 발생하여 회사가 납부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15. 이용자가 최근 3개월간 CMS이용거래를 통한 출금신청이 없는 경우
- ④이용자가 제4항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CMS이용거래의 해지를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용자는 소명자료를 통하여 해지의 원인을 해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출된 소명자료가 CMS이용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기까지 CMS이용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 ⑤회사가 전항의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회사가 정한 운영규정에 따라 별도의 통보 없이 CMS이용거래를 해지할 수 있다.
- ⑥회사는 결제기관이 정지정검을 통보하거나 회사가 CMS서비스 제공에 있어 전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기점검 및 기술적 필요에 따른 일시적 중단이 필요한 경우 CMS이용거래를 중지할 수 있다.
- ⑦회사는 제4항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서비스(SMS), 회사의 홈페이지, 서비스게시판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고지한다. 단, 전항제발, 긴급정체발생 등 불가항력발생 등 불가항력발생 시 사유로 중지된 경우에는 사유에 통보할 수 있다.
- ⑧회사는 이용자가 CMS서비스 접속비밀번호를 연속으로 5회 이상 오류를 발생시켰을 경우 CMS이용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CMS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제 13 조 【 이용기간 】

- ①본 CMS이용거래는 계약서가 회사에게 접수되고 회사가 이용승인을 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승인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 ②본 CMS이용거래의 이용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지점의 해지의 서면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용기간은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 14 조 【 부정접속의 방지 】

- ①회사는 부정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추가인증수단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접속용 비밀번호 입력오류가 연속 3회를 초과할 경우 이용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②이용자가 이용중지의 해제를 원할 경우, 회사에 그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 15 조 【 신용정보의 조회 】

이용자는 본 CMS이용거래의 승인을 위하여 회사가 이용자의 신용정보 조회하는 것을 동의한다.

제 16 조 【 이용관할 】

본 CMS이용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 장 자동이체서비스

제 17 조 【 담보금의 설정 】

- ①이용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 또는 회사와 업무제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은행 등의 관련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칠 경우 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금으로 이용자가 신청한 월간출금한도액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현금예치의 방법으로 CMS이용거래 승인과 동시에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는 회사에게 회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해보험보합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②이용자는 월간출금한도 이성을 납부자의 계좌에서 출금되지 않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담보금을 사전에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사전에 담보금을 회사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자동이체 자금의 정산이 보류될 수 있다.
- ③회사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경우 민원의 처리, 제 7조에 규정한 이용요금 부족분의 충당, 부도자금의 반환, 기타 사고처리 등을 위해 제1항의 담보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이에 인하여 담보금에 부족분인 발생할 경우 이용자는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 ④본 CMS이용거래가 해지 될 경우,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담보금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용자에게 반환한다.

제 18 조 【 자동이체 동의서 접수 】

- ①이용자는 자동이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납부자에게 반드시 자동이체동의를 접수받아야 한다.
- ②이용자가 납부자로부터 받는 자동이체 동의 접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서면 또는 녹화에 의한 자동이체 동의서 접수
- 2.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서비스에 의한 자동이체 동의 접수
- 3.타 전자금융거래법에 인정한 방법에 의한 자동이체 동의 접수

③이용자가 납부자로부터 받는 자동이체통의서에는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납부자의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혹은 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실명,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2.자동이체를 제공하는 내용과 예금주의 서명(또는 인감) 날인, 단, 납부자와 예금주의 명의가 상이한 경우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 필요

3.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명

4.자동이체되는 서비스의 명칭과 금액

5.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④이용자는 납부자로부터 접수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전산등록 후 이를 보관하며, 납부자로부터 접수한 신청서의 원본은 납부자가 자동이체 신청을 해지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납부자가 자동이체신청서 원본의 조위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⑤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수된 자동이체 신청내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자동이체 신청과 관련된 여부와 신청내역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⑥이용자는 납부자로부터 자동이체거래의 신규, 변경, 해지 등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납부자 또는 제3자가 납부자를 위하여 신청인의 계좌를 출금계좌로 신청할 때 개인인 경우에는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절차히 하고 신분증사본과 자동이체통의서를 받아 처리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동록증 및 통장사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표자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정구)을 첨부한 자동이체 통의서를 받아 처리한다.

2.납부자가 자동이체와 관련하여 출금계좌통을 변경할 때에는 신규 자동이체 신청으로 처리하며, 제1호에 준하여 업무처리 하여야 한다.

⑦이용자는 납부자로부터 정구한 자동이체신청서의 허위작성, 허위정보제공, 본인확인소를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9 조 【 자동이체 신청, 해지 및 변경 DATA 전송 】

①이용자가 회사에게 자동이체서비스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이용자는 납부자로부터 자동이체신청서를 접수한 후 회사가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와 계약시에 정한 처리마감시간까지 자동이체 신청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전 영업일로 한다.

2.이용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해 등록된 자동이체신청정보를 제3자변조, 연락처의 오류 등의 사유로 인한 납부자와의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②자동이체 변경, 해지

1.이용자가 납부자로부터 자동이체 관련 내용의 변경, 그 해지(만기로 인한 자동해지 등 포함)등을 신청 받는 경우에는 회사가 제공하거나 이용자와 회사가 이용을 합의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2.납부자가 이용자에게 자동이체신청을 하고 회사에게 서면 또는 납부자본인의 책임으로 이음예매를 이용하여 해지 요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자동이체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되어 있을 경우 요청 제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자를 통해 자동이체통을 해지한다. 단, 이용자를 통한 자동이체 해지리가 거절되어 납부자와의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의해 납부자의 자동이체통을 해지하고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3.회사는 제2호에 따라 납부자가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한 계좌에 대하여 이용자가 자동이체 정구를 하더라도 인출하지 않기로 한다.

4.자동이체변경 및 해지 관련한 DATA의 관리는 별도로 행해지는 이용자와 납부자의 계약에 준한다.

제 20 조 【 자동이체 서비스의 처리 】

①자동이체서비스 업무

1.이용자가 회사에게 각종 수납대금의 자동이체를 의뢰할 때에는 희망 이체일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2.등록 완료된 자동이체의뢰명세는 별도의 확인일자 없이 이용자의 정당한 유효한 자동이체제외로 간주된다. 단, 거래의 안전성을 위하여 회사가 정한 추가적인 조치를 거쳐서 처리될 수 있다.

3.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등록된 자동이체의뢰명세에 의거 이용자의 이체지정일(공휴일 및 공휴기간 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납부자의 계좌로부터 이체외리금액을 인출하여, 이용자와 회사간의 계약한 정산주기에 의거 수수료율을 제한 이체의외리금액을 이용자의 수납계좌로 입금 처리한다. 단, 입금액이 공휴일 및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처리된다.

4.회사는 이용자가 등록된 자동이체의뢰명세금액보다 자동이체신청정보의 지급가능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자동이체를 하지 아니하고 지급불능으로 처리한다.

5.자동이체처리 시 자동이체신청정보에 자गत알수표가 인출되었을 때에는 그 수표의 주심결제 전이라도 인출할 수 있다.

6.제5호에 의하여 인출된 후 자गत알수표가 부도 반환되어 당해 계좌에서 부도지급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자의 수납계좌로부터 예금청구서 및 통장 또는 수표의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이체금액을 출금하여 정리하며 그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7.회사가 이용로부터 전송받은 자동이체의뢰명세에 따라 제18조와 제19조에 의거하여 이체처리업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납부자와의 모든 분쟁은 이용자의 책임이며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이용자가 대 납부자 업무처리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⑧이용자는 CMS이용자리를 위하여 출금이체정보를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납부자의 자동이체신청서(또는 제 18조 2항에 규정한 자동이체 통의서의근거)를 등록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 단 회사는 이용자가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공한다.

9.회사는 CMS이용자리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가 통합관리시스템에 납부자의 자동이체 신청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자동이체거래의 정산

1.회사는 자동이체에 의해 납부자로부터 수납된 수납자금을 약정된 정산주기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수납계좌로 입금한다.

2.이용자의 정산지정일이 공휴일 또는 공휴기간 휴무일인 경우 회사는 익영업일에 입금을 한다.

3.제21조에 따라 납부자 보호조치로 회사에서 환불을 행한 경우 제2항 제1호의 정산금액에서 환불액을 공제할 수 있다.

4.회사는 이용자가 수납자금을 수령하지 못 할 경우 전지공용거래법 제1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착오인출 처리

1.업무처리착오 등으로 이용자에게 자동이체신청정보를 신청하지 아니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이체 처리된 경우에는 회사는 착오인출내용을 이용자에게 유선통지하며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통지를 받아 즉시 착오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착오 입금된 금액을 당일 종료 후 타인의 예금계좌로 반환하여야 한다. 납부자가 제18조 제2항의 단서에 의해 대리인임을 통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납부자가 그 신청에 동의한 사실인 경우에는도 같다. 다만, 착오로 입금된 사실이 확실하고 이용자의 수납계좌로부터 통장 및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착오 인출금액을 인출하여 위 타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처리하며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할 수하기로 한다.

2.이용자가 회사에게 자동이체신청을 의뢰한 계좌에서 착오입금신고가 13회(최대면 1월1일부터 12월31일 기준)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대하여 본 계약에 의한 업무를 회사가 이용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간 CMS출금을 정지하기로 한다.

3.회사가 제3항 제1호의 착오인출 여부를 확인할기 위하여 제18조에 규기 이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자동이체신청내역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용자는 회사에게 통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자동이체처리를 하지 않는다.

1.이용자가 회사에게 의뢰한 자동이체대상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거래종류계좌에 만입되어 있을 때

2.이용자가 회사에게 의뢰한 자동이체대상계좌가 법적 또는 기타의 사유로 거래가 제한되어 있을 때

3.이용자가 회사에게 의뢰한 자동이체 수납자금을 회사가 정한 한내 수령하지 않을 때

제 21 조 【 납부자의 보호 】

①회사는 다음 각호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경우 납부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이용자가 납부자에게 자동이체통의를 정구하지 않고 출금한 경우

2.이용자와의 연락두절로 자동이체통의의 정구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납부자가 자동이체신청을 철회하였음에도 이용자가 업무적으로 출금한 경우

4.CMS 이용거래내역이 비정상 거래로 확인되는 경우

②회사는 납부자로부터 제1항의 민원이 접수되면 이용자에게 자동이체신청서 접수 혹은 비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납부자의 보호조치에는 회사의 적극적인 민원해결 존재, 납부자에 대한 이용자의 정보제공(회사명,연락처, 주소등) 및 출금자금의 대지급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④이용자는 회사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인해 납부자 보호조치를 취했을 경우 해당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통 조치로 인한 회사의 손실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어 한다.

⑤본 조항[21조 납부자의 보호]은 4장 휴대결제 및 유선전화결제, 5장 신용카드결제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 3 장 가상계좌서비스

제 22 조 【 업무처리시간 】

업무처리 시간은 회사의 대납부자 영업시간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업무처리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 23 조 【 입금업무처리 】

①회사는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통보나 요청이 없는 한 이용자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예금 청구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않고 이용자가 미리 약정한 수납계좌로 미리 정한 정산주기에 의하여 이체하기로 한다.

②회사는 이용자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대하여 그 거래명세서에 연결된 전산명부에 의하여 당일 중 이용자에게 전송한다.

③이용자의 가상계좌에 타점으로부터 입금된 경우에는 그 타점상 위 원금인 후에 지급가능하며, 타점권 입금액에 따른 이용자의 인식 및 처리는 이용자의 전산시스템에서 자체 보완하기로 한다.

④회사가 수납한 타점권이 부도 반환되었을 때에는 통 부도대전을 이용자의 정산자료에 즉시 차감하여 처리하며, 잔액 부족시 추후 이용자의 정산자금 입금 시 차감하여 정산하거나, 이용자가 회사의 지정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이다.

제 4 장 휴대결제 및 유선전화결제

제 24 조 【 정보취득 】

①이용자는 납부자로부터 결제승인거래 전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사가 인정하는 동의 방법은 제18조 2항에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며, 납부자로부터 받는 항목은 제18조 3항 3,4,5를 포함하고 휴대폰번호, 통신사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비대면 또는 대면환경에서 납부자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물리적 동의증명자료(전자서명, 인감날인 및 본인서명, 녹취, OTP 등)를 반드시 포함한다. 단, 납부자로부터 정구한 동의증명자료의 허위작성, 허위정보제공, 본인확인소를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이용자는 결제 동의신청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회사가 관련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련서류는 해지 후 5년 동안 보관을 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회사와의 서면합의 또는 별도 합의한 동의신청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25 조 【 정산 】

①정산은 해당 결제기관으로부터 회사에게 입금된 금액으로 하며, 이용자가 결제승인한 당월(이하 “M월”)의 결제금액에 대한 실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며, 회사와 약정한 정산주기에 의해 정산 지급한다.

②미납금액에 대한 정산에 대해 회사는 M월의 결제금액을 최초 정산 본은 해당월을 포함하여 6개월간 이용자에게 정산 지급한다. 단, 결제기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회사는 결제기관에서 이용자의 수납액을 정산 반면 이용자 및 상호 합의한 정산주기 단위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이용자와 약정한 수납계좌로

정산 지급한다. 단, 공휴일 또는 공휴기간 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하며 결제기관의 사정으로 회사로의 입금이 지연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대한 지급도 지연될 수 있다.

④회사와 결제기관이 보유한 출금내역이 상이한 경우 이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사는 정산금액 지급 연체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⑤회사는 다음 각호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여 회사에서 환불을 행한 경우 그 환불에 관한 정산본은 해당월 또는 이후의 정산날에 관한 정산금액으로부터 환불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 26 조 【 결제승인 】

2.이용자와의 연락두절로 동의신청서의 정구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납부자가 동의신청을 철회하였음에도 이용자가 업무적으로 정구한 경우

⑥정산과 관련하여 과오납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재정산한다.

⑦결제기관 정책에 따라 장기미납고객에 대해 채권추심수수료 발생 시 해당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이용기관에 정산한다.

제 26 조 【 결제승인 】

①결제승인요청은 이용자가 납부자로부터 정구한 결제정보로 요청하며, 결제승인요청 시 결제금액은 결제기관이 납부자의 신용도에 따라 규정한 한도금액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결제기관의 정책에 따라 한도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②결제승인주소 및 환불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거한다.

1.결제승인주소는 결제승인된 날이 속하는 해당월에 결제기관이 설정한 기한까지 요청된 경우

2.환불은 결제기관 청구가 발생한 이후 시점에서 결제취소가 요청된 경우

③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산프로그램에서 수행한다.

제 5 장 신용카드서비스

제 27 조 【 정보취득 】

①신용카드자정보에 이용자는 제18조(자동이체 통의서 접수에 명시된 사항을 신용카드자동이체통의서 접수시에도 준수하여야 하며 납부자의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유효기간을 확인 해야한다. 단, 납부자로부터 정구한 자동이체통의서의 허위작성, 허위정보제공, 본인확인소를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이용자는 납부자의 지불정보를 보유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용카드자동이체서비스에 의해 정기간등 을 위하여 무득이 이용자의 지불정보를 보관하고자 할 때는 회사 및 납부자로부터 사전통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일시 보관되는 신용카드 지불정보는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으로 제한한다.

제 28 조 【 거래승인 】

①거래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불정보는 회사의 사전허락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납부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는 고객에게 지불정보를 요구하거나 지불정보를 대신 입력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거래승인된 당해 결제수단의 유효성 및 결제능력의 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당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 사용 여부를 확인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납부자가 제공한 신용카드정보가 결제기관에 등록된 해당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 및 당해 신용카드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도난, 분실 등에 의한 본인 미사용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거래승인 사실로 이용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제 29 조 【 신용카드 승인제한 】

①회사는 이용자의 신용도, 매출유형, 납부자의 이의신청 및 민원발생 빈도, 민원해결을 위한 협조정도 회사의 리스크관리, 운영방식에 따라 이용자에 대하여 월, 할, 단, 신용카드사별로 신용카드 승인한도 및 할부거래 개월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이용자에게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이 결제기관으로부터 비정상거래 등의 사유로 확인되어 승인한도가 제한된 경우, 신용카드사의 승인제한 조치에 따른 모든 손실 발생 부분은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③결제기관의 일방에 의한 이용자의 신용카드 승인한도 제한 및 승인中止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사유 및 결과를 유선 또는 서면, E-Mail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 30 조 【 정산 】

①회사는 결제기관으로부터 정산 입금된 거래에 대해 부가세를 포함한 결제수수료를 제하고 이용자와 회사간의 계약한 정산주기에 의거 이용자의 수납계좌로 일단원 이할 심사 계산하여 입금 처리한다.

②이용자의 정산지정일이 공휴일 또는 공휴기간 휴무일인 경우 회사는 익영업일에 입금을 한다.

③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사는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지급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결제 및 재판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

2.이용자가 회현해, 다단계, 사금융, 불법세, 전유류 등 등의 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거나 그 사업의 결과, 거래 거래 물건의 우위가 있는 경우

3.납부자가 본인 미사용(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이나 물품 미배송 등의 이의를 제기한 경우

4.이용자의 매일요청내역이 결제기관 등의 지급내역과 상이한 경우

5.이용자가 제31조에서 정한 담보제공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이용자의 담보설정금액의 비정상적증 대 또는 감소, 정산된 고객의 거래가 민원, 이의제기 등 취소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7.제2항부터 이용자가 보전제한(가압류, 가처분 등) 또는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8.이용자가 회사의 CMS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이용자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에 대해 고객의 취소 및 민원제기 등을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보류하여야 하는 경우

9.이용자가 제11조 10항에서 기술한 해당 증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차기 정산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단, 차기 정산대금이 통 대금에 미치지 못하거나 계약이 해지, 만료된 경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반환하기로 한다.

제 31 조 【 담보의 제공 및 승인한도 】

①이용자는 본 계약의 위반에 의해 대출할 수 있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고, 회사의 손실금액을 배상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를 피보증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가 여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자와 회사간의 합의하에 회사는 이용자에 대한 은행예금질권 또는 현금담보설정 등의 담보설정으로 이행보증보험증을 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기타 담보설정 금액은 이용자의 매출규모 및 자산건전성, 판매신용도, 거래만전장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매매보상장치 등)확대 등 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담보설정행가를 통하여 정하기로 한다. 단, 이용자의 매출규모 확대 등 담보설정행가에 변동이 있을 시회사는 통 담보설정 금액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③회사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상의 담보기간 만료 시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담보설정 계약내용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단, 계약 해지시 회사는 이용자의 정상거래 건에 한하여 지급보류된 결제대금을 지급한다.

④본 계약기간 중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가 1건이라도 발생한 경우 계약 당시 체결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기타 담보설정계약은 해지하지 아니한다.

⑤이용자의 월 승인한도는 담보설정금액(이행보증보험증권상의 보험가입금액 또는 기타 담보설정증서를 통한 담보금액 등)에 한정하여 설정된다.

⑥회사의 판단하에 사면에 서면상으로 승인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기타 이용자가 지정한 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⑦항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월 승인한도 및 기타사면은 회사의 영업담당자와 별도로 서면상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⑧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담보설정에서 지 지급한 정산대금을 공제한 경우 담보설정 금액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2 조 【 해외발행 신용카드 】

①해외발행 신용카드는 회사와의 서면에 의한 합의 없이는 CMS 이용이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에 위반한 거래로 인한 책임은 이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

②회사는 해외발행 신용카드 거래 건에 대하여 향후 거래수수 등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해외발행 신용카드 거래건의 비정상적 증대의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하여 정산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3 조 【 납부자의 이의제기시 처리 및 부도반환 】

①납부자가 본인 미사용(신용카드거래의 경우 신용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유 포함)이나 물품 미배송 등의 이의제기의 경우 이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납부자의 이의를 해결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납부자의 이의제기의 경우 이용자에 대하여 제31조 제3항(정산대금의 지급보류)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해제의 경우 납부자가 이의제기한 거래에 관하여 본인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배송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회사는 결제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반환받은 정산대금을 차기의 정산대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이용자의 부도 시 회사는 손해배상정구를 위해 채권1소위의 자취를 보유하며, 부도 이후 6개월간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부칙 (07. 7.)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07.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0. 1.)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10.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1. 1.)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11. 5.9부터 시행한다.

부칙 (12. 9.)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12. 10.15부터 시행한다.

부칙 (14. 2.)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14.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4. 8.)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14. 8. 7부터 시행한다.

부칙 (15. 3.)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15. 5.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8. 5.)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18.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 3.)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19. 3. 15부터 시행한다.